

## 동탄청소년문화의집 대관 및 대여 운영규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육성·활동·복지 증진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제공되는 동탄청소년문화의집의 대관 및 대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사용자의 이해와 편의를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① “청소년”이라 함은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단,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등 상한 기준에 관련하여 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사용료는 청소년에 준한다.

② “일반”이라 함은 청소년을 제외한 모든 연령의 사람을 말한다.

③ “청소년단체”라 함은 법 제3조 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「청소년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

④ “공공기관”이라 함은 정부의 투자·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·운영되는 기관이다.

⑤ “학교”라 함은 일정한 시설과 조직을 갖추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사회가 공인하는 제도적 기관이다.

⑥ “다목적강당”은 대규모 강의나 강연 및 체육활동을 위한 다목적 공간이다.

⑦ “미디어스튜디오”는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, 편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구비 되어 있는 공간이다.

⑧ “댄스연습실”은 안무를 연습하기 위해 필요한 거울, 스피커, 넓은 공간 등을 갖추고 있는 공간이다.

⑨ “강의실”은 강의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갖추고 있는 공간이다.

⑩ “대관”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.

⑪ “대관자”라 함은 이 규정에 따라 대관 신청을 하여 승인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**제3조(대관시설 및 대여장비)** 대관 및 대여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대관할 수 있는 시설

1. 다목적강당, 미디어스튜디오, 댄스연습실, 강의실1, 강의실2, 강의실3

② 대여할 수 있는 장비

1. 카메라, 카메라 렌즈, 짐벌, 캠코더, 태블릿

**제4조(시설별 사용 목적)** 모든 시설 대관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단순한 놀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① 다목적강당 대관

1. 구기종목을 제외한 체육활동 등의 목적으로 대관할 수 있다.
2. 최소 11명 이상의 사용 인원이 있어야 다목적강당을 대관할 수 있다.

② 미디어스튜디오 대관

1.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, 편집하거나 전문적인 장비 및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활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2. 모든 장비 및 기기는 사전 점검 후 사용하며, 사용 후 원상 복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.

③ 댄스연습실 대관

1. 댄스 및 공연 연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2. 구기종목 등의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관할 수 없다.

④ 강의실 대관

1. 동아리 활동, 회의 공간 등의 목적으로 대관할 수 있다.

**제5조(대관 및 대여 신청의 승인)** ① 대관 및 대여를 신청하는 때는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, 별지 제2호 서식)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온라인으로 대관 신청을 진행했을 경우 대관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생략할 수 있다.

② 대관 및 대여 승인에 있어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적용한다.

1. 동탄청소년문화의집 소속 동아리 활동 및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
2. 동탄청소년문화의집 소속 동아리가 아닌 일반 청소년이 원하는 경우
3.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
4.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모든 대관 및 대여는 담당자의 승인 후 사용이 가능하다.

**제6조(대관 및 대여 신청의 제한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대관 및 대여 신청이 제한되거나 이미 승인된 대관 및 대여가 취소될 수 있다.

- ①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
- ②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
- ③ 정치, 종교, 영리 목적 등 공공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④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
- ⑤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이 해당 지역에 대량 발생한 경우

- ⑥ 승인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
- ⑦ 법령이나 조례, 사용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⑧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- ⑨ 그 밖에 기관장이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**제7조(시설 사용시간 등)** ①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을 정기휴관일로 한다.

- ② 대관은 평일 09:00부터 21:00까지, 주말 09:00부터 18:00까지로 한다.
- ③ 대관의 기본시간은 일반 2시간, 청소년의 경우 3시간으로 한다.
- ④ 대관 중 시설 사용 시간 외의 추가 사용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대관 시간이 최대 1시간 연장될 수 있고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.
- ⑤ 대관자는 기관의 주요행사로 인하여 대관 일정 조정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사용료 및 감면)** 사용료 및 감면대상은 <별지 제1호 서식>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.

**제9조(장비 대여)** ① 장비 대여를 신청하는 때는 장비 대여 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제출해야 한다.

- ② 본인의 명의로 대여한 모든 장비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- ③ 대여는 최대 14일까지 가능하며 승인받은 대여 기간을 엄수해야 한다.
- ④ 기한 초과 또는 대여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, 기한 외 1일당 7일 대여가 불가하다.
- ⑤ 반납 시 대여 상태 그대로인지 확인하여 확인 절차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반납 처리된다.

**제10조(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)** ① 대관자는 사용 후 반드시 정리 정돈을 완료해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대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.

- ②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의의무 소홀로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.
- ③ 대여 장비를 분실한 경우 동일한 모델의 물품으로 대체 반납해야 하며, 동일한 모델을 구할 수 없다면 그와 동등하거나 상위 사양의 장비로 반납해야 한다.
- ④ 대여 장비는 대여상태 그대로 반납되어야 하며, 대여 기간에 물품이 파손 및 고장 시에는 사용자가 직접 정구 서비스센터에 의뢰하여 수리비 직접 부담해야 한다.
- ⑤ 장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 및 관리에 부적절한 사용이 예상될 경우 대여가 불가할 수 있다.

**제11조(기타 사항)**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동탄청소년문화의집 기관장의 판단에 따른다.

[별지 제1호 서식] 시설 사용 신청서

시설 사용(□신규, □변경, □취하) 신청서												
시 설 명		화성시동탄청소년문화의집										
신 청 인	주 소											
	성명(대표자)				전 화 번 호							
내	단체(법인)명				생 년 월 일 (사업자등록번호)							
	사 용 시 설 명 (해당시설에 V표시)	<input type="checkbox"/> 4층 강당 : 빔, 영상, 약100명 좌석 <input type="checkbox"/> 3층 강의실 1 : 빔, 영상, 음향, 책상 24개, 의자 24개 <input type="checkbox"/> 3층 강의실 2 : 빔, 영상, 음향, 책상 24개, 의자 24개 <input type="checkbox"/> 3층 강의실 3 : 책상 6개, 의자 12개 <input type="checkbox"/> 2층 댄스연습실 : 빔, 음향, 거울 (10명 이내 사용) <input type="checkbox"/> 2층 미디어스튜디오 : 영상장비 일체, 책상 2개, 의자 8개										
용	사 용 일 자	. . .			사 용 시 간	: ~ :						
	사 용 목 적											
사 용 인 원	사 용 인 원	초등학교 남자	초등학교 여자	중학교 남자	중학교 여자	고등학교 남자	고등학교 여자	~24세 남자	~24세 여자	성인 남자	성인 여자	총인원
	사 용 요 금 (담당자 작성 칸)	구 분		성 인			청소년			사용료		
부 대 시 설	사 용 요 금			기본시설	부대시설	기본시설	부대시설					
	강 당											
	강 의 실											
	컴 퓨 터 실											
	댄 스 연 습 실											
미 디 어 스 투 디 오												
부 대 시 설	<input type="checkbox"/> 냉·난방 / <input type="checkbox"/> 무선마이크 /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선마이크 / 기타 ( ) ※ 무선마이크 건전지 대관자 준비(AA 2개)											
감 면 대 상	<input type="checkbox"/> 여 <input type="checkbox"/> 부			감 면 사 유								
변 경 (취하)	내 용 사 유											
※ 첨부서류 : 행사계획서, 감면 증빙서류(감면대상 시), 기타 필요한 서류 「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(□신규, □변경, □취하)을 신청합니다.												
년 월 일 신 청 인: (서명 또는 날인)												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귀하												
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 예 ( ) 아니요 ( )												

## 화성시동탄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사용요금

(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·3, 일부발취)

### 가. 기본시설 사용료

(단위: 원)

구 분		금 액		
		일반	청소년	비 고
다목적강당	1회/2시간	50,000	무료	청소년은 무료로 하며, 1회 사용시간을 3시간으로 한다.
미디어실	1회/2시간	20,000	무료	
강 의 실 (컴퓨터실, 댄스연습실 포함)	1회/2시간	30,000	무료	

※ 토·일요일, 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기준 사용료의 20%를 가산한다.

### 나. 부대시설 사용료(다목적강당)

(단위: 원)

구 분		금 액		비 고
		일반	청소년	
냉난방 사용료	1회/2시간	20,000	10,000	
음 향	마이크(유선)	1회(2개)	5,000	2,500
	마이크(무선)	1회(2개)	6,000	3,000

### 다. 감면기준

감면대상	감면비율	비 고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 목적 행사	100%	
화성시 소재 학교, 공공기관, 청소년단체의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 행사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		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	100%	수강료는 50%에 한함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	
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	50%	
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구성원		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		
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		
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만 65세 이상 노인	50%	수강료는 30%에 한함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		
「화성시인구정책기본조례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	30%	
사용료 등을 그린카드 또는 경기아이플러스 카드로 납부하는 자	10%	그린카드는 본인, 경기아이플러스 카드는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본인 및 자녀에 한함
그 외 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	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비율 준용	

#### <가, 나, 다 공통사항>

- 1) “청소년”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- 2) 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사용료는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청소년에 준한다.
- 3) 매시간 초과 시 기준 사용료의 20%를 가산한다.
- 4)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.
- 5) 다목적강당은 냉난방 장비의 사용에 따라 추가 경비를 부담한다.
- 6) 감면비율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것으로 하고,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.
- 7) 시설 사용자는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용료 등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8) 시설이나 장비를 대여할 경우에는 감면대상자들로 구성된 법인, 단체, 모임 등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다.

[별지 제2호 서식] 장비 대여 신청서(앞)

동탄청소년문화의집 미디어스튜디오 대관 및 장비 대여 신청서																							
시 설 명		화성시동탄청소년문화의집																					
신청인	주 소																						
	학 교						학	년															
	단체(법인)명																						
	성명(대표자)						전 화 번 호																
인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					보호자 전화번호 (14세 미만 청소년)																
	내 신 청 항 목 (해당시설에 V표시)	<input type="checkbox"/> [대관] 미디어스튜디오 : 회의실, 편집실, 촬영실 <input type="checkbox"/> [대여] : 카메라 (쏘니 ZV-E10) <input type="checkbox"/> [대여] : 카메라 렌즈 (쏘니 SEL50F18F 50mm) <input type="checkbox"/> [대여] : 카메라 렌즈 (쏘니 SELP18105G 18-105mm) <input type="checkbox"/> [대여] : 카메라 렌즈 (쏘니 SELP1650 16-50mm) <input type="checkbox"/> [대여] : 카메라 렌즈 (삼양옵틱스 AF 75mm F1.8FE) <input type="checkbox"/> [대여] : 짐벌 (DJI OM 4 SE, 휴대폰 짐벌) <input type="checkbox"/> [대여] : 캠코더 (Gopro HERO11 BLACK) <input type="checkbox"/> [대여] : 캠코더 (ZOOM Q8N-4K) <input type="checkbox"/> [대여] : 태블릿 (갤럭시탭 S8, 11inch)																					
용		사 용 일 자						사 용 기 간															
		사 용 목 적																					
사 용 인 원		초등학교 남자		초등학교 여자		중학교 남자		중학교 여자		고등학교 남자		고등학교 여자		~24세 남자		~24세 여자		성인 남자		성인 여자		총인원	
※ 첨부서류 : 행사계획서, 감면 증빙서류(감면대상 시), 학생증 및 청소년증(청소년만 해당), 필요한 서류 등																							
<b>장비 활용 관련 동의서</b>																							
① 본인의 명의로 대여한 모든 장비는 타인에게 양도가 절대 불가합니다. ② 장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·관리에 부적절한 사용이 예상될 경우 대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. ③ <b>최대 대여 기간은 14일</b> 이며, 승인 받은 대여 기간을 엄수해야 한다. ④ 기한 초과 또는 대여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, 기한 외 1일당 7일 대여 불가합니다. ⑤ <b>대여 물품은 대여 상태 그대로 반납</b> 되어야 하며, 대여 기간 중에 물품이 파손·고장났을 시에는 사용자가 직접 정규 서비스센터에 의뢰하여 <b>수리비 직접 부담</b> 하여야 합니다. ⑥ 대여 물품을 분실한 경우 동일한 모델의 물품으로 대체 반납해야 하며, 동일한 모델을 구할 수 없다면 <b>그와 동등하거나 상위 사양의 장비로 반납</b> 하여야 합니다. ⑦ 반납 시 대여 상태 그대로인지 확인하며, <b>확인 절차가 끝나야 최종적으로 반납</b> 처리 됩니다. ⑧ 이외 대여 운영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기관 측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. ⑨ 장비대여 과정에 있어 대여 품목의 상태를 확실히 인지하였으며, <b>장비의 이상이 없음을 확인</b> 하였습니다. ⑩ 대관 및 대여 신청 관련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. • 정보활용 및 수집·사용 목적 : 대관 시설·대여 장비 및 사용 청소년 관리 • 수집항목 : 신청인 이름, 연락처(본인 및 보호자), 주소, 소속(학교) ⑪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거부할 경우 모든 대관·대여가 불가합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
위와 같이 대관 및 대여 사용 (□신규, □변경, □취하)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																							
신 청 인:															(서명 또는 날인)								
지 도 자:															(서명 또는 날인)								
화성시동탄청소년문화의집관장 귀하																							
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    예 (    )    아니요 (    )																							

[별지 제2호 서식] 장비 대여 신청서(뒤)

동탄청소년문화의집 장비 반납 확인서				
신청인	성명		전화번호	
	생년월일		보호자 전화번호 (14세 미만 청소년)	
내용	장비항목 (반납항목에 V표시)	<input type="checkbox"/> [대여] : 카메라 (쏘니 ZV-E10)		
		<input type="checkbox"/> [대여] : 카메라 렌즈 (쏘니 SEL50F18F 50mm)		
		<input type="checkbox"/> [대여] : 카메라 렌즈 (쏘니 SELP18105G 18-105mm)		
		<input type="checkbox"/> [대여] : 카메라 렌즈 (쏘니 SELP1650 16-50mm)		
		<input type="checkbox"/> [대여] : 카메라 렌즈 (삼양옵틱스 AF 75mm F1.8FE)		
		<input type="checkbox"/> [대여] : 짐벌 (DJI OM 4 SE, 휴대폰 짐벌)		
		<input type="checkbox"/> [대여] : 캠코더 (Gopro HERO11 BLACK)		
		<input type="checkbox"/> [대여] : 캠코더 (ZOOM Q8N-4K)		
		<input type="checkbox"/> [대여] : 태블릿 (갤럭시탭 S8, 11inch)		
반납일자	. . .			
장비파손여부				
위와 같이 대여 사용을 종료하고 반납합니다. 년 월 일				
신청인:			(서명 또는 날인)	
지도자:			(서명 또는 날인)	
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    예 (    )    아니요 (    )				